

폐쇄회로 텔레비전 (CCTV) 내부관리계획

1. CCTV 설치 목적

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 방지, 노인요양시설의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며,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 및 종사자의 보호, 안전사고 예방, 시설물 관리, 범죄예방, 증거확보 등을 위함.

2. CCTV 설치 운영 관리자

관리책임자	대표
운영담당자	시설장

*CCTV 운영 장비는 8층 사무실에 설치하며,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.

3. CCTV 설치장소

침실	18대	30대
공용공간	현관4대, 프로그램실 및 거실3대, 요양실3대, 사무실1대, 물리치료실1대	

4. CCTV 성능 및 촬영시간, 열람 장소, 촬영범위 등

1) 성능 : 화질 FHD , 60일 이상 보관 저장장치

2) 24시간 상시촬영되고 있으며 보관기간은 60일로 영상정보는 60일 이후에 자동 삭제된다.

3)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는 8층 사무실이다.

4) 촬영범위 : 공동거실(침실과 연결되는 복도), 침실(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전원의 동의를 받음), 현관(외부에서 출입이 보이는 각도), 물리치료실, 프로그램실, 사무실, 안전관리 및 보안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촬영한다.

5)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: KT 텔레캡 CCTV

5. 안내판의 규격 및 기재사항, 부착 장소

1) 안내판 규격 및 기재사항

- 규격 : 가로 20CM, 세로 10CM
-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, 촬영시간, 설치장소 (촬영범위)
-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

2) 안내판 부착 장소

- 출입구
- 5,6,7,8층 게시판

6. CCTV 열람가능사유

- 1)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, 신체,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,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- 2)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,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- 3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「노인복지법」 제 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
- 4) 범죄의 수사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5)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,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
7. 열람요청시 제출서류

1)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서식서 (CCTV 영상물 열람 혹은 존재확인 요청서)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담당자에게 문서로 요청함.

2)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,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8. 운영자의 금지행위

1)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

2)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 (ZOOM-IN)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

3)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